

▣ 제 2 주 제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대응체계의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방안

권 형 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대응체계의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

권 형 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I. 문제 제기

「감시자본주의 시대」의 저자 쇼사나 주보프(Shoshana Zuboff)는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문에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이 통과된 직후 “민주적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합법적인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를 위한 첫 번째 포괄적 선언이다.”라고 주장하였다.¹⁾

구글이나 메타 등 혁신적 플랫폼이 가져온 풍성한 보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로운 디지털 체제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매 순간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데이터로 추출되어 상품화되어 나간다. 산업화가 자연을 훼손하고 지구 환경을 위협하게 되었듯이, 감시자본주의와 새로운 도구주의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성장하면서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²⁾

유튜브³⁾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고, 이제는 이를 압도하고 있다.

영상을 보는 플랫폼에 불과했던 유튜브가 실생활의 활동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곳으로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영상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환경에서 모바일로 시청하는 유튜브 뉴스가 급성장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이란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유튜브 저널리즘이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현상적으로는 뉴스 수용자들이 유튜브에서 ‘저널리즘’을 소비하고 있다는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인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⁴⁾ 유튜브의 미디어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전통적 언론과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언론사가 제공하는 유튜

1) 김익현, “EU발 디지털서비스법 강풍 전 세계로 확대된다”, 신문과 방송 7월호, 2022, 16에서 재인용.

2) 쇼사나 주보프(김보영 옮김), 「감시 자본주의 시대」(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문학사상, 2021.

3)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시청, 공유 및 게시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의미한다.

4) 박아란, “미디어 자유 개념의 확장 and 재구성”, 한국언론학회 202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언론학 100년, 통섭과 융합), 2024, 83; 최진호·이현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브 채널 외에도 정치, 시사적 내용을 다루는 채널은 구독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기
도 한다. 신문이나 방송과는 다른 특성이 있지만,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유튜브의 경우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유튜브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규제의 무풍지대라 볼
수는 없다. 인터넷 공간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환경과 인터넷 접근성으로 인
하여 국가적 규제가 없거나 완화되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
이 될 것이라 기대한 인터넷 공간이 이제는 온갖 허위 정보의 바다라는 오명도 함께
안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든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은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막강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⁵⁾ 유튜브는 인터넷
에서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적 콘텐츠를 확산하는데 가장 강력한 매체의 하나가 되었
고, 이에 따라 유튜브 규제강화에 대한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맞물려 있어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관
계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발제문은 유튜브 저널리즘에 의한 인격권 침해구제 수단으로서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
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그리고 개선 과제로서 유튜브 콘텐츠가 언론중재법
상 조정·중재의 대상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현행 대응체계와 유튜브 규제의 헌법적 한계

1. 유튜브 콘텐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와 한계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무단 사용, 허위 사실 또는 음란물 유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문제들
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유튜브 방송의 선정적,
폭력적, 반사회적 콘텐츠로 인한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수
익이나 인기를 위해 유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편승하기도 한다.
플랫폼 서비스사업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제재하
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 공공성, 보편적 서비스, 소비자 보호, 공동체 유
지 등을 이유로 규제를 받아왔다. 방송법적 규제를 받는 ‘방송’은 공적 책임과 사전심

5) 이성엽, “EU의 디지털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 Act)의 시사점”, MINISTRY OF JUSTICE, 5~9
(5).

의 및 편성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유튜브 방송은 현행법상 정보통신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에게 “전기 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방송 심의는 일반인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수된 신고 중 통신 심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시정요구나 자율규제 권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⁶⁾

강제력 있는 제재가 아니라 통신심의를 하더라도 플랫폼 서비스사업자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 그리고 문제가 된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의 계정 해지 및 정지가 전부이다.

또한 유튜브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이나 영상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저장 의무가 없어 증거자료로 삼는 것도 어렵고, 스트리밍으로 방송된 콘텐츠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을 때 크리에이터를 제외하고 심의 대상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는 것도 곤란하다.

유튜브는 자체 이용약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해당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신고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율규제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용자들이 직접 해당 콘텐츠를 신고하면 유튜브는 이를 검토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따라 콘텐츠 삭제나 채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인격권 침해와 같은 심각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 콘텐츠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삭제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수많은 콘텐츠를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디지털 융합 현상은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세계

6) 임한솔·정창원, “국내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현황 및 규제 방향성 제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2020, 252(248-264).

적으로는 방송통신융합 현상에 따라 통합법 체계를 마련하여 수평적 규제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으로 이분화된 수직적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헌법 제 21조 제3항이 ‘통신과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매체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라는 의미이다.⁷⁾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적 명령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다양한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재량을 갖고 방송과 통신체제를 선택하고 매체 특성에 맞는 실체적인 규율을 해야 하는 것이다.⁸⁾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 규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인간존엄성과 가치 존중에 뿌리를 둔 기본권으로 사실에 입각한 의사소통과 문화적 가치 및 윤리적 틀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헌법은 사전검열을 수단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사후제재도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은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위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⁹⁾

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는 형식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정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¹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선택하는 기능인 필터링(filtering)도 표현의 자유의 가치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터넷 포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필터링하여 제공하고 있고, 내용과 방법의 결정은 플랫폼 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한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 사업자는 자신이 선택하고 지시한 내용을 공개하기 위하여 선택 결정과 평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때로는 사업자의 다양한 의도에 맞추어지고 의사의 다양성 측면보다는 상업적 이해관계 등 요인에 의해 정보의 왜

7) 이에 대해 권형돈, “헌법상 방송개념과 OTT서비스의 방송법적 규제의 정당성”, 언론과 법 제18권 제1호, 2019, 15-16 (1-36).

8) 헌재 2003.12.18. 2002헌바49.

9) 권형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 혐오표현 · 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51호, 2020, 3-34.

10) 헌재 2004.1.29. 2001헌마894.

곡이 발생하기도 한다.¹¹⁾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의사 표현의 대표적인 수단이 SNS와 유튜브 방송이다. SNS는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적인 매체이자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 수단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SNS의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이라는 특성상 다른 기본권에 대한 법익 침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¹²⁾ 이에 대해 유튜브 방송은 미디어의 소비 형태가 대부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불법 음란물이나 허위 정보, 혐오 표현 등의 온상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유사 방송에 대해 아직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방송이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언론의 개념은 어느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된다.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규제 논리를 유튜브 등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¹³⁾ 전통적 미디어와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정보를 나르고 혐오를 조장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임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반된 의견의 배경에는 표현의 자유의 법리에 대한 각국의 문화적 차이점이 있다. 다양한 미디어 형태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는 시각은 각국의 법 전통과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의 제정은 개인정보보호나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를 더 중요하게 간주하는 유럽 각국의 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⁴⁾

인터넷 플랫폼이 전통적 미디어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자칫 표현의 자유에 오히려 퇴행을 가져올 수 있는 지배적 의사의 과도한 집중과 그 남용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보다는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각국의 법과 규제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 활동이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SNS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법적 대응도 복잡하다. 특히 유튜브 방송은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도 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11) 이부하, “디지털 시대에 의사표현의 왜곡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독일 헌법이론을 겸하여 고찰하며”, 법학논문집 42권 3호, 2018, 45.

12) 문재완,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발표문, 2012. 6, 123~149 (125).

13) 황성기, “OTT 서비스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4집 1호(2017), 1~25 (4).

14) 디지털 서비스법의 제정 취지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다(What is illegal offline should also be illegal online)”는 것이다. 이성엽, “EU의 디지털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 Act)의 시사점”, MINISTRY OF JUSTICE, 5~9 (6).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튜브 규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함께 다른 기본권적 법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디지털 융합 현상은 미디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법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Ⅲ. 외국의 입법례 :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해외의 대응체계와 시사점

1.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1) 법의 주요 내용

2022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인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제정하여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⁵⁾ 동법은 정보를 중개·유통하는 플랫폼 서비스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⁶⁾

동법은 전문과 5개의 장(Chapter) 및 7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플랫폼 서비스사업자의 면책조항, 제3장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주의의무, 제4장 규칙의 시행 및 집행, 제5장 규칙의 평가·발표·적용 등에 관한 조항이다. 특히 제3장에서는 중개 서비스사업자, 호스팅 서비스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사업자,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사업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법의 적용 대상을 4가지 사업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⁷⁾ 그리고 정보를 중개하는 플랫

15) DSA는 2022. 7. 의회의 최종승인이 있은 후 2023. 4. 선제 규제대상 19개를 발표한데 이어 2023. 8. 25. 시행된 바, 우선적으로 거대 규모의 플랫폼 서비스사업자와 검색엔진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며, 2024. 2. 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EU의 디지털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16) 디지털서비스법은 2020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22년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의 회 회의에서 제정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동법은 EU 회원국 27개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U는 DSA 입법이 역내 모든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규칙(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

17) 중개 서비스(Intermediary services)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나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와 같이 통신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 전송 또는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단순전달자(mere conduit)’서비스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네트워크에서의 전송으로 구성되는 ‘캐싱(caching)’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호스팅 서비스(Hosting service)는 이중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정보저장이 이루어지는 저장·전달서비스를 주로 하는 클라우드서비스나 웹호스팅 서비스를 의미한다. 온라인플랫폼은 “서비스 수신자 요청에 따라 공개 정보를 저장 및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자를 의미한다. 앱스토어, 공유경제 플랫폼, SNS나 온라인마켓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중 EU 지역 내 월평균 4천5백만 명 이상 유효 서비스 수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알리바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틱톡, X, 유튜브 등이

품사업자에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각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플랫폼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투명성 보고의무와 연락처 및 법적 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둘째, 불법 콘텐츠 삭제로 호스팅 서비스사업자는 불법 콘텐츠 신고 메카니즘 구축 의무가 부과되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판매자 신원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 셋째, 투명성 강화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분쟁 관련 정보, 콘텐츠 조정을 위해 사용된 자동화 수단 관련 정보, 타겟 광고에 사용된 주요 매개 변수 등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모든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이용조건에 콘텐츠 조정을 위한 정책·절차·조치·수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연 1회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넷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의무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불법적인 내용 전파를 통한 서비스의 불법적 이용행위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콘텐츠, 혐오 표현의 불법 전파, 위조품 등 법률이 금지하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이에 해당한다. ②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부정적 위험의 방지 의무가 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 설계로 인한 문제도 방지해야 한다. ③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사업자가 의도하거나 설계된 제공의 위험도 방지해야 한다. 공공질서 및 사생활의 보호와 연관되고 사기적·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④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온라인 플랫폼보다 더 엄격한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추천 시스템의 중요 매개 변수를 공개해야 하며,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 강화, 데이터 접근과 조사 허용, 주기적인 투명성 보고의무가 포함된다.¹⁸⁾ 디지털 서비스법의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아마존, 애플, 메타,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하여 의무를 부과한다.

(2) 분석 및 시사점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전자상거래 지침의 개정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운영 방식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

이에 해당하며 검색서비스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Bing, 구글 서치가 이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권일, “독일에서의 규제 논의의 현황과 과제”, 공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024, 3~30(17).
18) 곽정호, “EU 디지털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 지식 넓히다. 세계는 지금, 66~71(70~71).

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온라인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용자가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을 퇴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¹⁹⁾

다음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임시 조치의 명령 등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플랫폼을 더럽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중단을 의무화한 것이다.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수익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²⁰⁾ 더 이상 온라인에서 관용과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관적 원칙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약관에 정책 및 수단을 명시하고,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 법정 외 분쟁 해결 등 실효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삭제와 콘텐츠가 삭제된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였다는 점은 시사점으로 삼을 만하다.

2.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1) 법의 주요 내용

2017. 6. 30.에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2017. 10. 1.부터 발효된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의 억제에 입법 목적이 있다.²¹⁾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독일 국내에 등록된 이용자 수가 2백만 명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사업자는 보고의무와 이의제기 처리 의무를 부과받는다. 독일 형법의 범죄구성

19) 김현수·전성호,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20-11, 2020, 1~33 (32~33).

20) 디지털 서비스법은 삭제·차단의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 또는 ‘불법 콘텐츠’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해당 법률의 정확한 주제 또는 성격과 관계없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 또는 그 활동과 관련하여 EU법 또는 회원국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하여 불법 정보 또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정의를 EU 및 회원국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망법에서 9가지의 불법 정보의 유형을 정하면서 특히, 성범죄물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EU는 법을 위반한 정보를 모두 불법 콘텐츠로 보고 있다. 이성엽, 앞의 논문 7.

21) 네트워크법집행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제정 당시 독일 사회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증가로 인종 차별적 게시물과 함께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를 악용한 극우세력이 발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난민에 대한 혐오·증오 표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인종 차별적 발언이나 혐오표현의 생산·유포·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혁에 대해 권형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51호, 2020, 3-34 (16-21).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게시물은 서비스사업자가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편집한 게시물이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게시물이 있는 플랫폼과 개인 간의 소통이나 특정 내용을 배포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에서 배제해야 한다. 둘째, 불법 게시물로 한 해 100건 이상 이의제기를 받은 서비스사업자는 처리 실태에 대해 기간 내에 공지할 의무가 있다. 셋째, 불법 게시물에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서비스사업자는 즉시 절차에 따라 처리 또는 삭제해야 한다. 불법임이 명확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사업자는 독일 내에 송달 대리인을 플랫폼에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사업자가 보고의무, 이의제기 처리 절차, 조직상 결함의 시정 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5백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극우주의와 혐오범죄 대처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Rechtsextremismus und der Hasskriminalität)이 제정되면서 독일 내 플랫폼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고,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Richtlinie über audiovisuelle Mediendienste, AVMD-RL)이 개정되면서 영상공유 플랫폼상의 불법 콘텐츠 대책을 위한 의무가 강화되었다. 극우주의와 혐오범죄 대처법에 따른 서비스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네트워크법집행법도 개정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법 제3a조에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사업자는 형사 범죄 기소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연방범죄청에 전송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였다. 게시물이 삭제되었거나 적법하지 않게 신고된 경우 이용자를 위해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중재기관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3c조는 중재(Schlichtung)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신고자나 위반 콘텐츠 이용자와 서비스사업자 간의 재판 외의 분쟁 해결을 위해 사법적(私法的)으로 조직된 기관(privatrechtlich organisierte Einrichtungen)을 중재기관(Schlichtungsstellen)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 중재 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조건 및 처리절차, 중재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민간 중재 기구가 아닌 행정기관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법 제3f조는 동영상 공유플랫폼 서비스 분쟁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의한 중재(Behördliche Schlichtung für Streitigkeiten mit Videosharingplattform-Diensten)로 되어야 하며,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설치한 중재기관이 중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감독기관은 이를 규제된 자율규제 기구(Einrichtung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2) 분석 및 시사점

네트워크법집행법은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 of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독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동법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과 함께 독일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종차별과 난민에 대한 혐오 조장의 심각성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사기업인 플랫폼 서비스사업자에게 사적 검열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야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심했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라,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공권력이 강제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n Selbstregulierung)의 방식으로 실질적 규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²²⁾

2019년 페이스북은 보고의무 이행 규정 위반으로 200만 유로의 벌금, 2021년 불만 제기 절차 규정 위반으로 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2023년 텔레그램 메신저도 페이스북과 유사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51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상반기에 유튜브와 X의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유튜브는 총신고 193,131개 중 30,870개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였고, X가 총신고 1,101,456개 중 267,421개를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나 차단 조치된 콘텐츠 대부분이 24시간 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플랫폼사업자들이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규제함으로써 실제로 강력한 집행력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³⁾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치욕스러운 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⁴⁾ 개정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삭제된 게시물 복원을 위해 법원의 강제절차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적인 중재위원회 제도도 도입하였다. 신고당한 자의 이의제기 절차, 신고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규정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해 재심을 받도록 한 것은

22) 규제된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심영섭,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독일에서의 ‘규제된 자율규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1호, 2024, 37~72.

23) 자세한 내용은 이권일, “독일에서의 규제 논의의 현황과 과제”, 공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024, 3~30.

24) 「Reporter ohne Grenzen, Warnung vor Schnellschuss」, 2017.5.17. 구체적으로 권형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51호(사법발전재단), 2020, 3-34.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내용물 심사에 대한 우회로로 플랫폼 서비스사업자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업자가 과잉 대응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네트워크법집행법을 위반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각국에서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유튜브 등 플랫폼 서비스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마침내 유럽연합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으로 중복되는 규정은 폐지되고 현재는 벌칙 조항만 남아 있다. 범유럽 감독 기구에 의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EU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해서 위반할 시 EU 내 영업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 중소 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에서 감독하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Digital Services Coordinators)을 통해 EU 차원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네트워크법집행법에서 문제가 됐던 원산지원칙을 넘어 역내에는 단일법을 적용하여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사업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²⁵⁾

IV. 한국에서 유튜브에 대한 대응 : 언론중재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1. 국회 제출 언론중재법 개정 법안 검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3건이다. 그 가운데 2021년 6월 22일까지 발의된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다.

법안은 주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정정보도 등의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이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 확대와 위원 추천 등의 규정 보완, 둘째, 기사의 열람 차단에 대한 정의 신설과 함께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의 기사 열람 차단 청구, 셋째,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 사업자로 하여금 정정보도 등의 표시와 내용을 쉽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25) 이유진, “네트워크법집행법 대체하는 디지털서비스법, 더 이상 책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플랫폼”, 신문과 방송 8월호, 2023, 101~104.

등을 할 의무 신설, 넷째,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법안의 내용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었는데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조작 보도’, ‘명백한 고의’, ‘중과실’ 등 개념의 주관성으로 인한 명확성 원칙 위반 논란, 명예훼손죄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만을 남긴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21대 국회에서 6개의 법안이 더 제출되었는데,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주목할 만하다. 언론사의 활동 영역이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언론의 정의를 확대하여 유튜브 등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의 범주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었다.²⁶⁾ 현행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²⁷⁾ 언론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침해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언론의 정의 규정에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²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유튜브 등을 통한 언론사의 보도도 언론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해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활용되고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인격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다.

26)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9177호)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언론의 정의를 확대한 법안²⁹⁾의 형태로 발의된 것과는 달리, 22대 국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 법안³⁰⁾의 형태로 발의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언론사의 유튜브 형식의 보도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하여 왔지만, 언론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보도를 조정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현행법상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중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제공하는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심의 대상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정보의 ‘보도의 목적’ 여부에 따라 소관 기관 결정되는데, 현행법은 보도³¹⁾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 유튜브에 대한 언론중재법의 적용은 가능한가?

29)

현행	개정안
○ 언론의 정의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u>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u>	○ 언론의 정의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u>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u>

30)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함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⑪ (생략)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매개(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 ② ~ ⑪ (현행과 같음)

31)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튜브는 언론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가?

현행법은 언론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인 ‘언론의 보도’에 유튜브는 제외되어 있다. 언론으로서 유튜브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매체는 지속적인 발전 과정에 있고, 유튜브의 구체적 발현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브 1인 방송이 급증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나 불법 정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온 것이고, 유튜브를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 역무로 편입시켜 일반 방송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도 있었다.³²⁾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융합 미디어로 확장하여 방송의 규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디지털 융합 현상은 전통적인 방송 이론과 언론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매체로서의 방송과 신문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고, 헌법상 방송의 개념도 그러한 관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상 방송의 개념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언론 매체의 정의가 헌법상 언론 매체의 개념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³³⁾

헌법에서 방송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방송의 개념이 사회적 영역에서 실질적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새로운 미디어가 전통적인 매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이 그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를 이미 도입되어 있는 기술에만 근거하여 한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³⁵⁾ 언론의 자유가 변화하는 미래에도 그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술에 국한해서는 기본권을 보호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의 토대에서도 언론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방식만을 따르는 경우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 있다.³⁶⁾ 따라서 유튜브가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 이는 언론 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유튜브는 주파수의 희소성이 사라진 정보화 사회에서 공공의 의사형성과 밀접

32) 이에 대해 권형돈, “헌법상 방송개념과 OTT서비스의 방송법적 규제의 정당성”, 언론과법 제18권 제1호, 2019, 1~36.

33) 권형돈, 언론과법 제18권 제1호, 2019, 16.

34) BVerfGE 74, 297, 350. 현행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언론의 보도를 규정하고 있음

35) BVerfGE 74, 297, 350.

36) 권형돈, “헌법상 방송개념과 OTT서비스의 방송법적 규제의 정당성”, 언론과법 제18권 제1호, 2019, 1~36 (17).

한 관련성을 갖는 “방송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언론 매체로서 기본권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유튜브의 다양한 기능 중 보도 기능은 전통적 방송의 전송방식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것으로 방송이 가진 대중 선동력, 영향력의 광범성 및 현실성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방송 개념에 대한 헌법적 판단 기준은 공공의 의사 형성에 대한 매체로서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도 방송시장을 세분화하면서 뉴미디어와 전통적인 방송에 대해 이중적 규제제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미디어 서비스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선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였다. 시장에서 같이 행동하고 경쟁하는 동안에는 동일한 규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차별적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³⁷⁾ 방송법상 방송과 동일한 규제로 갈 것인지의 문제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자의 형성 영역이다.

(2) 언론중재법 적용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안

전통적 미디어는 사회 현안과 시사 정보에 대해 게이트 키핑을 통해 재구성하여 뉴스의 형태로 보도하고 해설하는 과정을 거친다. 유튜브는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미디어의 상당수는 모니터링 또는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다.³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유튜브를 방송과 통신 어떠한 범주에 포함할지, 구체적 규제 수단은 무엇으로 할지 여전히 고민이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플랫폼 내에서 혐오 표현, 폭력적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일일이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튜브가 사실상 언론의 보도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프로그램 제작·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규제의 바깥 영역에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³⁹⁾

37) 이에 대해 권형돈, “헌법상 방송개념과 OTT서비스의 방송법적 규제의 정당성”, 언론과법 제18권 제1호, 2019, 1~36 (9).

38) 이도연·김동윤·김현, “이용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언론으로 인식하는가?: 가짜뉴스 확산 경로인식, 미디어 신뢰도, 뉴스 소비 행태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53권 1호, 2022, 269~288(270).

39) 유튜브는 언론사 계정이나 채널을 통해 기사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구글의 유튜브는 해외 플랫폼사업자로 현행법상 등록 대상도 아니다. 방송법상 방송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결국 언론사의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채널에 대해 독립적으로 중재나 조정을 시행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박아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2~21 (17~18).

사회 현안과 시사 정보를 이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는 결과물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가 플랫폼에서 대중들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 역할을 한다. 대중들은 온라인에서 개인 유튜브가 이미 언론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언론사와 유튜브의 input 기능과 output 기능을 누가 수행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상호 간의 인용 보도를 통하여 조작과 왜곡이 일어난다. 실무적으로는 유튜브와 같이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언론보도’로 보고 침해구제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2023년 선고된 유튜브 관련 판결은 총 15건이었는데 손해배상을 인용한 일부 판결에서 법원은 당해 채널이 유튜브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진실 확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⁰⁾ 또한 법원은 유튜브 채널에서 게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⁴¹⁾에서는 정정보도문의 형식을 기존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문 형식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언론사와 같은 지위에 놓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정정보도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유튜브 채널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원고를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튜브를 언론 매체로 보면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불가피한데,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²⁾

법규 미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당수 유튜브 관련 판결에서 언론사가 발행한 기사와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상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같은 언론의 범주로 보며 판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유튜브를 통신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중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모든 유튜브 방송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분쟁업무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업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중 제공 주체가 ‘언론’이며, 그 대상도 ‘보도’로 한정하고 있어 심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를 삭제·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40) 서울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1가합575651판결

41)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482 정정보도청구 등

42) 서울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1가합575651판결;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물론 모든 유튜브 미디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 뉴미디어 규제에 대해서는 양적 하한선을 설정해서 접속 서비스 수를 대상으로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벨기에의 경우에는 시청자 수보다 잠재적 시청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행인, 주소, 연락처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 사용자에 대한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⁴³⁾ 따라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을 모두 언론 중재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시사 보도 논평’을 주로 하는, 그래서 이용자들이 ‘언론’으로 인식하는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정의하고 조정·중재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시사 보도 논평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정의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 개정 법안의 내용처럼 언론이 제공하는 유튜브 보도 기능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으로 하고, 이후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미디어 법 개정의 경우 무엇보다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신뢰를 잃어 언론의 공익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법규범은 그것이 통과되어도 규범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⁴⁴⁾

3. 유튜브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시 선결과제

유튜브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서 비소송적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현대적인 조정·중재 기구를 통한 비소송적인 분쟁 해결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른 조정·중재 기구와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⁴⁵⁾ 실제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43) 유튜브 채널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적용할 때 뉴스콘텐츠 생산자를 특정하기 위한 간기의무(刊記義務) 등 조정 절차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에서 텔레미디어 규제를 위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저널리즘 성격을 지닌 다양한 융합 매체에 대해 저널리즘 원칙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종,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2호, 2024, 81~136.

44) 국회의 입법검토안은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의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를 법 제2조제12호에 정의된 ‘언론사’로 수정하고, ‘보도’가 언론중재법 정의상 ‘언론’의 행위이고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언론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뉴스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위치를 매개에서 보도로 이동하고 ‘보도를 목적으로’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826호)에 대한 검토보고, 2024.8.

45) 성낙인, “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40년의 변화와 성과-”, 세계헌법연구 제27권 3호, 2021, 1~36 (23).

강조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외면하는 경향도 있다.⁴⁶⁾

현재 언론관계법은 디지털 시대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계층 구분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콘텐츠와 플랫폼 규제를 차별화하는데 부족하다. 방송과 통신,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개념을 재정의하고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법 전반에 대한 조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언론관계법 전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교한 법률 개정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침해행위 구제신청 시 언론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었다. 이와 함께 언론위원회가 새롭게 부여된 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부’를 추가하여 위원의 정수를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 이유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가 공정성을 확보해 왔다는 평가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의도 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함께 당사자의 화해와 수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조정·중재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본다.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의 폐지 이후에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도로써 존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오고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 변화도 필요하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이 유지·존속되면서 유튜브 미디어에 대한 조정·화해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V. 마무리

디지털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공간개념의 형성은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의사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인터넷의 특성과 결합한 다양한 매체는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으로서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 거짓 정보 등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되어 침해받고 있다. 허위 뉴스인지 혐오 표현인지 법적인

46) 심석태, 「사례와 쟁점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컬처북, 2016, 21~23.

판단도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려로 처벌도 쉽지 않다. 하지만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고 언론 매체 일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건전한 공론장의 성립을 위협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이들의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네트워크법집행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독일 인터넷산업협회는 인터넷의 자유가 침해된 ‘암흑의 날’이라고 명했고, 많은 법학자와 각계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⁴⁷⁾ ‘국경 없는 기자회견’도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치욕스러운’ 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 실행된 이후에도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의 비대면성이라는 특징과 법적 흠결로 유튜브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 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의 영역에만 놔둘 수는 없다. 자율규제의 경우 유튜브 사업자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규제 입법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언론사 제공 유튜브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함께 기술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입법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47) Steiner, “Facebook-Gesetz”, heise online, 2018. 1. 1.